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경향

전속계약 분쟁의 특성상, 연예인 또는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등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염용표(법무법인(유한)윤촌 구성원 변호사)



I. 들어가며

최근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은 '위임 유사한 계약'의 성질을 갖는 계속적 계약이다.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위한 독점적·배타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는 대신 그 연예인에게 물적, 인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속계약에 따라 그 소속 연예인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연예 기획사와 유사한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연예기획사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성질상 전속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실무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뢰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연예기획사가 금전적으로 배상 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거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소속 연예인이 연예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소희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의 주요내용과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사례인, 강다니엘 사건 및 송소희 사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해 두고 있다.

1. 장기 전속계약에 따른 폐해 방지 위해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설정

2. 연예인의 인권보호 및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

(1)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제2조 2항, 제5조 5항)

(2) 연예인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통제권 강화(제5조 2항, 제6조 1항)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측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가능하고, 연예기획사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

(3) 연예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보호(제8조 내지 제10조)

(4) 연예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및 정산금의 정기 지급(제12조 7항, 8항)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에게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도 제공하도록 하여 투명한 수익분배가 이뤄지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도 가능

(5) 전속계약상 권리 이전은 연예인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제5조 6항)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및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예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3. 연예산업 발전토대 마련

(1) 연예활동에 따른 비용부담 관계 명시(제12조 1~5항)

연예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광고수수료, 기타 연예인이 동의하여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토대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수익분배 하기로 정함

(2) 유통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확대 토대 마련
(제10조)

연예기획사가 콘텐츠(제품) 판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연예인 자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자동으로 연예기획사에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

(3) 연예기획사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보증해야(제13조 1항)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에 대해 매니지먼트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을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확인하고 보증하도록 함

4. 분쟁해결방법

표준전속계약서 제17조는 당사자가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중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중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중재제도는 일반 소송(3심제)과 달리 단심제이고, 신속성과 비공개성 때문에 연예인 관련 분쟁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6개월 내에 분쟁이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이보다 짧은 평균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고 있다. 중재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심리과정, 내용 및 중재판정이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성'도 중재 제도의 큰 강점이다. 대외적 이미지가 큰 자산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상 심리 과정과 판결 결과가 공개되는 소송은 연예인의 활동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사례

1. 강다니엘 사건

필자가 수행한 강다니엘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은, 연예기획사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기초로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계약의 법적 성격이 '전속계약상의 권리 양도'인지 여부이고, 이럴 경우 전속계약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강다니엘씨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속 연예기획사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해당 공동사업계약이 연예기획사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를 대부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속계약에 위반한 것일 뿐더러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으로써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여 강다니엘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2. 송소희 사건

최근 2019. 9. 10. 소위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얻은 송소희와 소속 연예기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송소희는 소속 연예기획사 가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측에서 매니저의 무죄를 강변하며 여전히 해당 매니저로 하여금 송소희의 차량을 운전하게

1. 지난 10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모두 143건인데, 최근 5년 내에만 100건 이상이 접수됐다(법률신문, 2019. 8. 8. 자 1면 기사 참조)

함으로써 연예기획사 측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연예기획사측은 이는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기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면서, 그러한 경우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관련된 대법원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 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IV. 마치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법과 법정신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계약을 하고 그 조건을 꼼꼼히 따지며 지키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경향을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계약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전속계약 분쟁의 특성상, 연예인 또는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등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